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2. 6. 8

나. 회부일자 : 1992. 6. 8

3. 제안이유

가. 운수사업체 종사원교육시설 설립및운영기금의 일부를 적립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오던 충청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기금운영적립조례가 충청북도 운수연수원 개원 및 동 연수원 운영기금을 당해년도 과징금수입금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금적립기간(1984~1991)이 경과됨으로서 행정상 목적이 달성 되어 본 조례 폐지사유가 발생되었으며,

나. 현재 적립된 적립금 및 계속발생되는 과징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규정된 용도로 확대 사용키위함.

4. 주요 골자

가. 조례 폐지 및 조례명 변경

- 충청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폐지
-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로 변경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적립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 과징금 적립기금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 운영보조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며
- 벽지노선운영에 따른 결손의보전, 교통안전 시설의확충, 운수종사자의 교육 시설의확충 및 운영,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

5. 검토 의견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한편 징수금에 대한 사용을 위하여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행정상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용도(4종)로 사용키 위하여 과징금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별첨

-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 참고자료
 - 관련법규 1부.
 - 충청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1부.
 -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1부.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증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를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내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운영기금조성)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자동차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제9조(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연도 과징금운용 계획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

③ 운영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에 편입한다.

제10조(운영기금의 사용) 운영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한다.

1.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3.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 운영기금적립조례를 폐지한다.

③ (적립금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충청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u> <u>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u></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징수하는 <u>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u> <u>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u></p> <p>제 1 조 (목적) <u>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8 조 (운영기금조성) <u>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자동차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u></p> <p>제 9 조 (운영기금 적립 및 관리) ① <u>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연도 과징금운용계획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u></p>		

현행	개정 (안)
<p>(신 설)</p> <p>제 8 조 (시행규칙) (생략)</p>	<p>②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p> <p>③ 운영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에 편입한다.</p> <p>제10조 (운영기금의 사용) 운영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u> 2. <u>교통안전시설의 확충</u> 3. <u>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u> 4. <u>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p>제11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관련법규발취

自動車運輸事業法(1961. 12. 30) 法律第916號

- 第31條의2(課徵金處分) ① 交通部長官은 自動車運送事業者가 第3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同條 本문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第31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第1항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交通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徵收法의 예에 따라 徵收한다. 다만, 第31條의 權限이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道知事が 條例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法의 예에 따라 徵收한다.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金額은 徵收主體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되 다음 各號 이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僻地路線運行에 따른 缺損의 補填
 2. 交通安全施設의 擴充
 3. 運輸從事者의 教育施設의 設置·擴充 및 運營
 4. 自動車運輸事業의 經營改善 기타 自動車運輸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의 節次·對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⑥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課徵金으로 徵收한 金額의 運用計劃을 樹立 施行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 적립조례(1984. 9. 28) 조례 제134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적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구성)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 3 조(적립기간) ① 기금의 적립기간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로 한다.

② 기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완공시까지의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고 교육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립한다.

제 4 조(적립의 범위) 도지사는 매년 과징금 징수액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 결손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제 5 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선정하여 적립한다.

② 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에 편입한다.

제 6 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적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적립된 기금은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4.29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1984. 11. 23. 조례 제1390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징수하는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징금 납부 통지) ①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 즉시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 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7일로 한다.

③ 전항의 납기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 4 조(과징금 독촉) 도지사는 체납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 5 조(강제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받은자가 납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과징금 처분대상)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내부위임 포함)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